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제도 도입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12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제도 도입	3
※ 참고자료	19
1.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협의 절차도	19
2. 신속평가 결정 및 협의 절차도	20
3.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비교	21
4.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판단기준 (예시)	2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4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층평가 대상 사업 결정은 승인기관의 장 등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한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생략하되,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함. 신속평가 대상 결정은 환경부장관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토록하여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절한 이행 관리를 위해 협의내용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 규정 및 벌금·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

Ⅲ. 검토의견

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제도 도입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절차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층평가, 신속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①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현행 평가 절차에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을 추가하며, ②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현행 평가 절차 중 평가서 작성 및 주민 의견수렴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③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등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④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현행	개정안
	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거나

현행	개정안
<신설>	사업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현황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개정안
	<u>기준에 해당하는 경우</u> 2. <u>대상지역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지 않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u> ②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③ <u>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1. <u>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24조부터 제27조에 따른 평가 항목</u>

현행	개정안
	· 범위 등의 결정, 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현행	개정안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 ----- -----

현행	개정안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u>평가서 초안</u> 및 평가서 2. 3. (생략) 4. <u>제33조</u>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 ⑥ (생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34조제3항</u>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u>제34조제4항</u>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u>제4항</u>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1. -----<u>평가준비서</u> 및 <u>평가서 초안</u>,----- 2. 3. (현행과 같음) 4. <u>제33조</u> 및 <u>제52조의3</u>-----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 ----- ----- -----. 1. <u>제34조제3항</u> 및 제40조제2항과 <u>제52조의3제7항제1호</u>에 따라 준용되는 <u>제34조제3항</u>----- ----- 2. <u>제34조제4항</u> 또는 제40조제4항과 <u>제52조의3제7항제1호</u>에 따라 준용되는 <u>제34조제4항</u>----- ----- 3. ----- -----<u>제4항</u>과 <u>제52조의3제7항제2호</u>에 따라 준용되는 <u>제47조제3항</u>----- -----

현행	개정안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 ----- ----- -----.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 제36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6조제1항-----
1의2. (생략)	1의2. (현행과 같음)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 -----제4항과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2항-----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9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39조제2항,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서 준용되는 제49조제2항-----
<신설>	3의2.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

현행	개정안
<신설> 4. ~ 8.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조의3제7항제2호에서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의3. 제5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협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4. ~ 8.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 ----- ----- -. 1. 제40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2. 제40조제4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4항--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현행	개정안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 니한 자	1. 제36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 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6조 제1항-----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자	2. 제36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 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6조 제2항-----
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 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 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 -----제4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2항-----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 -----.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 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 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 제35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 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5조 제2항----- -----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 및 제52조의3제7 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5조 제3항----- -----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3. 제36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

현행	개정안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6조 제1항-----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 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 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 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7조 제1항-----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 항제1호에서 준용되는 제38조 제2항-----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층평가 적용례) 제8조제1 항제5호, 제52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환 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 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
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등을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규정¹⁾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8.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²⁾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구 분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 (17개 분야 81개 개발사업) ex)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개발제한구역(GB) 5,000㎡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등 ex) 주택, 공장, 체육시설

※ 출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 특성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를 차등화하려는 것으로,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고,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에 추가하여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2) 참고자료3.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비교

②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 절차 중 일부(주민 의견수렴 등 아래 표 ②~⑤)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구분	심층평가	신속평가
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 大)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 小)
대상결정 절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 승인기관의 장 등이 결정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 의회 심의 → 환경부장관이 결정

[제도 도입에 따른 현행 및 개정안의 평가 절차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환경영향평가	①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②평가 항목·범위 결정 ③평가서(초안) 작성 ④주민 의견수렴 ⑤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심층평가 대상) 현행 절차(①~⑤) + 공청회 의무화 + 환경부 지원 (신속평가 대상) 현행 절차 중 ②~⑤ 생략 가능 + (생략 시)환경보전방안 마련 (그 외 평가 대상) 현행 절차(①~⑤)와 같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신속평가 대상) 현행 절차(평가서 작성 및 협의) 생략 가능 + (생략 시)환경보전방안 마련 (그 외 평가 대상) 현행 절차(평가서 작성 및 협의)와 같음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대부분의 절차(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평가서 관련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가 생략되게 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① 신속평가는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환경영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영할 예정이며, ② 신속평가 대상 결정과정에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대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③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신속평가 대상을 결정하여 책임성이 담보되고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신속평가 대상 기준(안)]

생활환경	자연환경(반경 500미터 이내)
1. 대기(악취)오염 물질 배출시설 입주 허용 여부 2.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3.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4. 영향지역 내 지하수 이용 현황 5.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현황 6.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현황농도 10-5 초과 여부 7. 반경 2KM 인구밀도 393명/KM2 초과 여부 8. 대기오염물질 민감계층 이용시설 여부	1. 생태경관보호지역 2. 야생동물(특별) 보호지역 3. 수변구역 4. 녹지지역(보전녹지) 5.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6. 식생보전Ⅲ등급지 면적 10만㎡ 이상 7. 습지보호지역 8.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9. 지하수보전구역 1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1. 상수원 보호구역 12. 멸종위기종 서식지역 13. 습지주변관리지역 14. 주요 정맥 300m 이내 지역 15. 자연환경보전지역 16. 천연보호구역 17. 생태자연도 1등급지 1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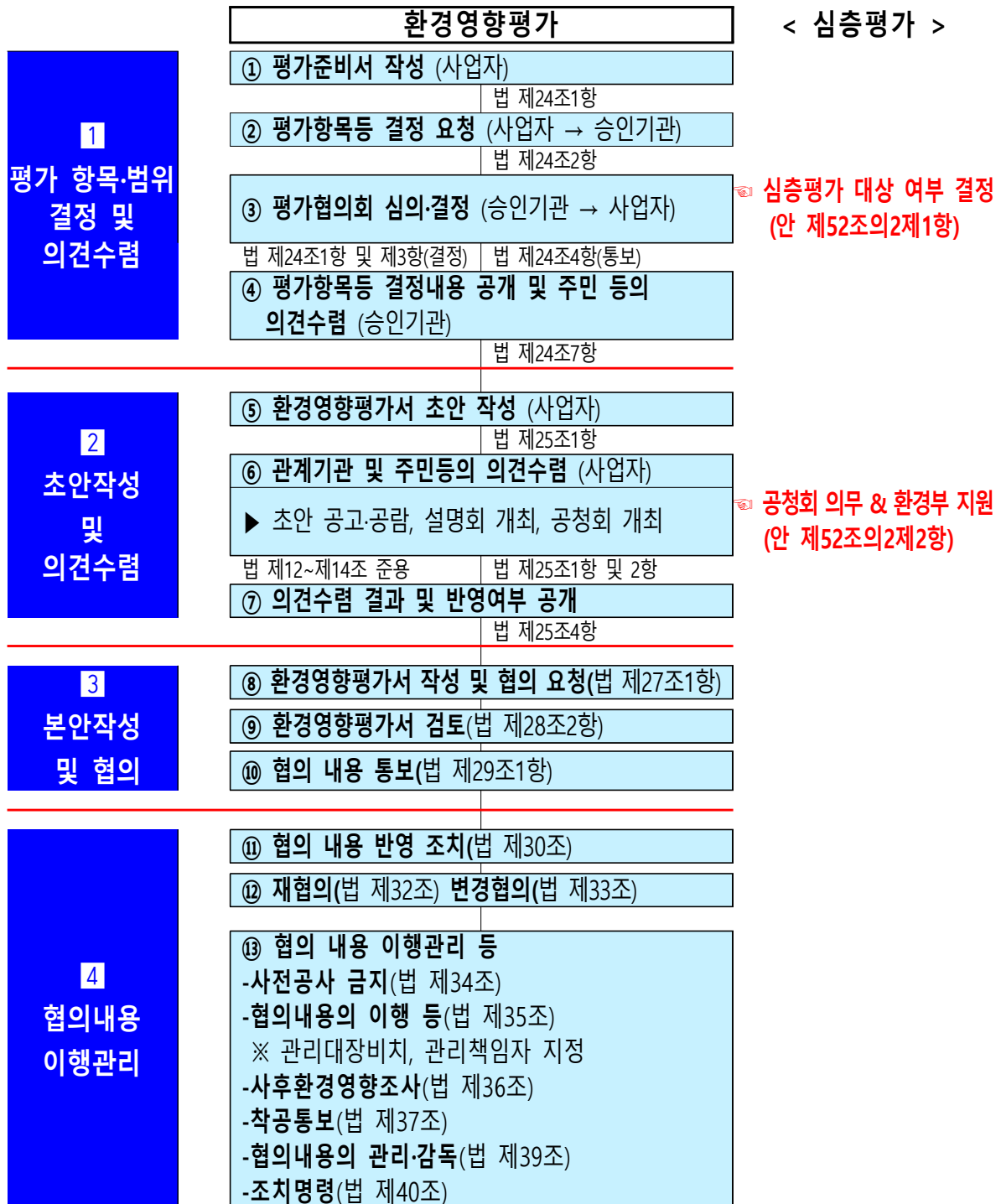
※ 출처: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협의 절차도

- ☐ 심층평가는 현행 평가항목·범위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시 심층평가 대상 여부도 함께 결정



2. 신속평가 결정 및 협의 절차도

- 신속평가는 사업자가 요청하면 환경부장관이 주민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여부 결정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신속평가 대상결정	① 평가준비서 작성 (사업자)
	② 신속평가 대상 여부 결정 요청 (사업자 → 협의기관) ※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승인기관을 거쳐 요청
	③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평가협의회 심의·결정 (협의기관)
	④ 신속평가 대상 결정 통보 (협의기관 → 사업자 및 승인기관)
2 환경보전 방안 검토	⑤ 환경보전방안 마련 검토 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
	⑥ 환경보전방안 검토 및 환경부 의견 청취 (승인기관)
	⑦ 환경보전방안 통보 (승인기관 → 사업자)
	⑧ 환경보전방안 반영 조치 등 - 환경보전방안 반영(안 제52조의3제6항) - 환경보전방안 반영여부 확인·통보(안 제52조의3제7항) * 법 30조제2항부터 제4항 준용
3 환경보전 방안 이행관리	⑨ 환경보전방안 이행관리 등 < 환경영향평가 > -사전공사 금지(법 제34조 준용) -환경보전방안 이행 등(법 35조 준용) ※ 관리대장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법 36조 준용) -착공통보(법 제37조 준용) -환경보전방안의 관리·감독(법 제39조 준용) -조치명령(법 제40조 준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전공사 금지(법 제47조 준용) -착공통보(법 제48조 준용) -환경보전방안 이행의 관리·감독(법 제49조 준용) -조치명령(법 제49조 준용) ※ 관리대장비치(X), 관리책임자 지정(X), 사후환경영향조사(X),
	⑩ 사업계획 등 변경 시 다시 평가 실시 (안 제52조의3제8항)

3.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비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 목결정 및 의견 수렴	① 평가준비서 작성(행정기관의 장) 법 11조1항	① 평가준비서 작성(사업자) 법 24조1항	
	② 평가항목등 결정요청 (계획제안자 → 행정기관의 장) 법 11조2항	② 평가항목등 결정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 법 24조2항	
	③ 평가협의회 심의·결정 (행정기관의 장 → 제안자) 법 11조1항(결정) 법 11조3항(통보)	③ 평가협의회 심의·결정 (승인기관 → 사업자) 법 24조1항(결정) 법 24조4항(통보)	
	④ 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행정기관의 장) 법 11조5항	④ 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승인기관) 법 24조7항	
2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행정기관, 계획제안자) 법 12조1항	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법 25조1항	
	⑥ 관계기관 및 주민등의 의견수렴 (행정기관의 장) ▶ 초안 공고·공람(법 13조1항) ▶ 설명회 개최(법 13조1항) ▶ 공청회 개최(법 13조1항) 법 12조2항, 13조	⑥ 관계기관 및 주민등의 의견수렴 (사업자) ▶ 초안 공고·공람(법 13조1항) ▶ 설명회 개최(법 13조1항) ▶ 공청회 개최(법 13조1항) 법 12~14조 준용 법 25조1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⑤, ⑥, ⑦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적용 (정책계획은 전략평가서에 대한 행정 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
	⑦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법 13조4항	⑦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법 25조4항	
3 본안 작성 및 협의	⑧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법 16조1항)	⑧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법 27조1항)	① 소규모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법 44조1항)
	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법 17조)	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법 28조2항)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법 4 5조2항) *법 17조2항 준용
	⑩ 협의 내용 통보(법 18조1항)	⑩ 협의 내용 통보(법 29조1항)	③ 협의 내용 통보(법 45조1항)
4 협의 내용 이행 관리	⑪ 협의내용 반영조치 및 이행(법 19조)	⑪ 협의 내용 반영 조치(법 30조)	④ 협의 내용 반영 조치(법 46조) * 법 30조 2항부터 4항 준용
	⑫ 재협의(법 20조) 변경협의(법 21조)	⑫ 재협의(법 32조) 변경협의(법 33조)	⑤ 재협의(법 44조제3항), 변경협의(법 4 6조의2)
		-협의내용의 이행 등(법 35조) ※ 관리대상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법 36조) -착공통보(법 제37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법 39조) -조치명령(법 40조)	-착공통보(법 48조)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법 49조) ※ 법 39조, 법 40조 준용 ※ 관리대상비치(X), 관리책임자 지정(X), 사후환경영향조사(X)

4.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판단기준 (예시)

□ 개요

-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해 환경평가지 활용되는 주요항목을 변수로 선정하여 체크리스트 방식 적용 (O : 해당 X : 해당 없음, △ : 데이터 없음)

□ 활용변수

- (생활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주허용 여부,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민감계층 이용시설 여부 등 8개 항목 적용

항목	해당여부
① 대기(악취)오염 물질 배출시설 입주 허용 여부	○, x, △
②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 x, △
③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여부	○, x, △
④ 영향지역 내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 존재 여부	○, x, △
⑤ 영향지역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2개 이상) 여부	○, x, △
⑥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현황농도 10^{-5} 초과 여부	○, x, △
⑦ 반경 2KM 인구밀도 393명/KM ² 초과 여부	○, x, △
⑧ 반경 1킬로 내 대기오염물질 민감계층 이용시설 유무 (학교,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병원, 장애인 시설 등)	○, x, △

- (자연환경)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으로 확인 가능한 습지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18개 보호지역 적용

항목			해당여부
① 생태경관보호지역	⑦ 습지보호지역	⑬ 습지주변관리지역	사업지역 반경 500m 이내 존재 여부 (○, x, △)
② 야생동물(특별) 보호지역	⑧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⑭ 주요 정맥 300m 이내	
③ 수변구역	⑨ 지하수보전구역	⑮ 자연환경보전지역	
④ 녹지지역(보전녹지)	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⑯ 천연보호구역	
⑤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⑪ 상수원 보호구역	⑰ 생태자연도 1등급지	
⑥ 식생보전Ⅲ등급지 면적 10만㎡ 이상	⑫ 멸종위기종 서식지역	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판단방법

- (심층평가) 생활환경 6개 이상 “○” 또는 자연환경 5개 이상 “○”
 - (신속평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항목 모두 “x”에 해당
- ⇒ 최근 접수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50개를 분석한 결과 심층평가 대상은 5건, 신속평가 대상은 4개로 잠정 분석됨

□ 적용사례

○ (심층평가 대상) 충주 법현 산업단지 조성사업(면적: 290,178m²)

▶ (사업내용) 산업시설 용지(204,068m²), 지원시설 용지, 주차장, 도로, 공원 등 * 업종: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특정대기오염배출시설 등이 입지하는 사업, 생활환경 항목 5개가 “O” 으로 심층평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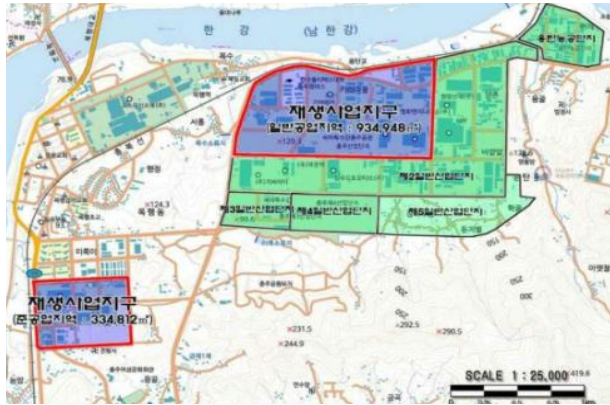
- 생활환경 : 5개 항목에서 “○”

항목	평가방법	해당여부
대기(악취)오염 물질 배출시설 입주 허용 여부	입주 허용 시 체크	○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배출하는 경우 체크	○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배출하는 경우 체크	○
영향지역 내 지하수 이용 현황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정 존재하면 체크	X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현황	대기질 영향지역 내 2개 이상 시설 존재 시 체크	○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현황농도 10 ⁻⁵ 초과 여부	2개 이상 물질의 위해성 초과 시 체크	○
반경 2KM 인구밀도 393명/KM ² 초과 여부	393명/KM ² 초과 시 체크	X
대기오염물질 민감계층 이용시설 여부	반경 1킬로 내 민감계층 이용시설 존재 시 체크	X

- 자연환경(반경 500미터 이내) : 18개 항목 모두 “X”

항목 / 해당여부					
생태경관보호지역	X	습지보호지역	X	습지주변관리지역	X
야생동물(특별) 보호지역	X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X	주요 정맥 300m 이내 지역	X
수변구역	X	지하수보전구역	X	자연환경보전지역	X
녹지지역(보전녹지)	X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X	천연보호구역	X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X	상수원 보호구역	X	생태자연도 1등급지	X
식생보전Ⅲ등급지 면적 10만m ² 이상	X	멸종위기종 서식지역	X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X

○ (신속평가 대상)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면적: 1,269,760m²)

▶ (사업내용)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조성, 주차장, 공원정비, 도로환경 개선 등 *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조성, 주차장, 공원정비, 도로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사업 ⇒ 추가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생활환경/자연환경 항목 전체가 'X'로 신속평가	
--	--

- 생활환경 : 8개 항목 모두 “X”

항목	평가방법	해당여부
대기(악취)오염 물질 배출시설 입주 허용 여부	입주 허용 시 체크	X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배출하는 경우 체크	X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배출하는 경우 체크	X
영향지역 내 지하수 이용 현황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정 존재하면 체크	X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현황	대기질 영향지역 내 2개 이상 시설 존재 시 체크	X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현황농도 10 ⁻⁵ 초과 여부	2개 이상 물질의 위해성 초과 시 체크	X
반경 2KM 인구밀도 393명/KM ² 초과 여부	393명/KM ² 초과 시 체크	X
대기오염물질 민감계층 이용시설 여부	반경 1킬로 내 민감계층 이용시설 존재 시 체크	X

- 자연환경(반경 500미터 이내) : 18개 항목 모두 “X”

항목 / 해당여부					
생태경관보호지역	X	습지보호지역	X	습지주변관리지역	X
야생동물(특별) 보호지역	X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X	주요 정맥 300m 이내 지역	X
수변구역	X	지하수보전구역	X	자연환경보전지역	X
녹지지역(보전녹지)	X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X	천연보호구역	X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X	상수원 보호구역	X	생태자연도 1등급지	X
식생보전Ⅲ등급지 면적 10만m ² 이상	X	멸종위기종 서식지역	X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X